

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0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4. 3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이원한 여성가족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포항시 출생률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.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개정(2024.3.27.) 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확대함으로써,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출산장려금”을 “출생축하금”으로 용어를 일괄 개정함
- 다자녀 가구 기준 정비(안 제2조제4호)
 - (현행) 포항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 - (개정)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구

다. 관련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포항시 출생률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」 개정 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양육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포항시는 2024년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‘자녀 3명 이상 가정’에서 ‘자녀 2명 이상 가구’로 완화함으로써,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오고 있음.
- 또한,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어, 조례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함.
- 포항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, 실질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,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